

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2024. 5. 16.

◀ 목 차 ▶

1. 주요 분석결과 / 1

가. 2023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301.1만명(미만율 13.7%) / 1

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과 그로 인한 수용성 저하에 기인 / 3

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농림어업 43.1% 숙박·음식점업 37.3% / 5

라. 규모별 미만율, 5인 미만 32.7% vs. 300인 이상 2.2% / 8

마.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533.6만명, 미만율 24.3% / 9

바.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미만율,
숙박·음식점업 55.0%, 5인 미만 사업체 미만율 49.4% / 11

사.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19.8%,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아 / 14

2. 시사점 / 15

[첨부] 최저임금 미만율 세부산출방식 및 주요가정 / 17

1

주요 분석결과

- ▶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청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액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을 의미하며, 2001년 이후 산출(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가 2023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301.1만명(미만율 13.7%)

- 2023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1만명(최저임금 미만율은 13.7%)으로 분석

※ 이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공표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과 동일

-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3년 301.1만명으로 2022년 275.6만명 대비 25.5만명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2023년 13.7%로 1.0%p 높아졌음.

$$\frac{\text{2023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 301.1\text{만명}}{\text{2023년 임금근로자 } 2,195.4\text{만명}} =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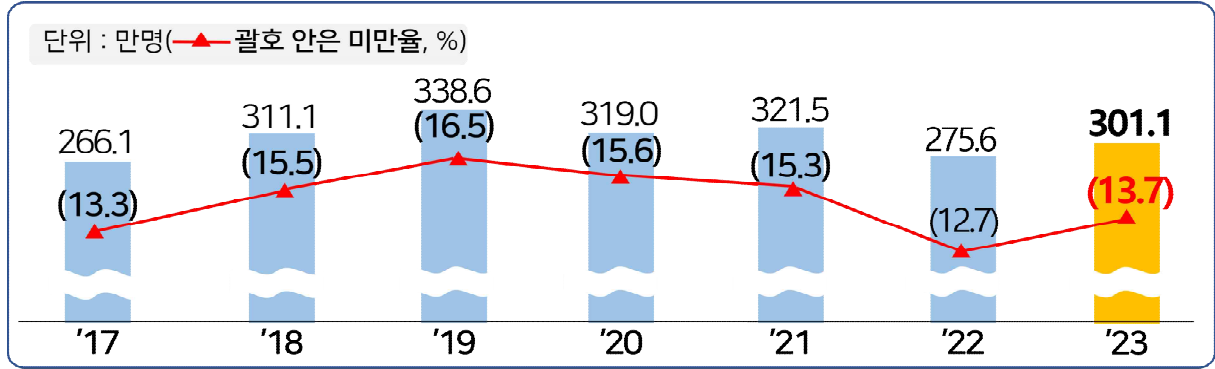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중

- **(미만 근로자 수)** 최저임금이 2018~2019년 두 해 동안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6만명에 달했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이후 감소하며 2022년(275.6만명) 300만명을 하회했으나, 2023년에는 301.1만명으로 다시 300만명을 넘어섰음.

* 2018~2019년 2년 간 최저임금 29.1% 인상 : 2018년 16.4%↑, 2019년 10.9%↑

- **(미만율)**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한 바 있지만, 2023년 13.7%로 전년 대비 1.0%p 증가

< 그림 1. 2017년 이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및 미만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연도

□ 최저임금이 제도 도입 이후 고율 인상을 거듭함에 따라, 노동시장 內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을 해당지표 최초 관측시점(2001년) 이후 크게 증가

○ 2001년 1,354.0만명이던 임금근로자 수가 2023년 2,195.4만명으로 62.1% 증가하는 사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57.7만명에서 301.1만명으로 421.8%(243.4만명↑) 증가,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을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9.4%p↑)

- 최저임금 미만자수는 2019년 338.6만명을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3년(301.1만명)에는 2022년 275.6만명보다 25.5만명 증가

- 최저임금 미만을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2.7%로 연달아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13.7%로 증가*

< 표 1.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을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 만 명)

구분	'01년	'10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01 대비 '23
임금 근로자 수	1,354.0	1,718.9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2,195.4	841.4↑ (62.1%↑)
미만 근로자 수	57.7	196.9	311.1	338.6	319.0	321.5	275.6	301.1	243.4↑ (421.8%↑)
미만을	4.3%	11.5%	15.5%	16.5%	15.6%	15.3%	12.7%	13.7%	9.4%p↑
최저임금(원)	1,865	4,11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7,755원↑ (415.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연도; 최저임금위원회

4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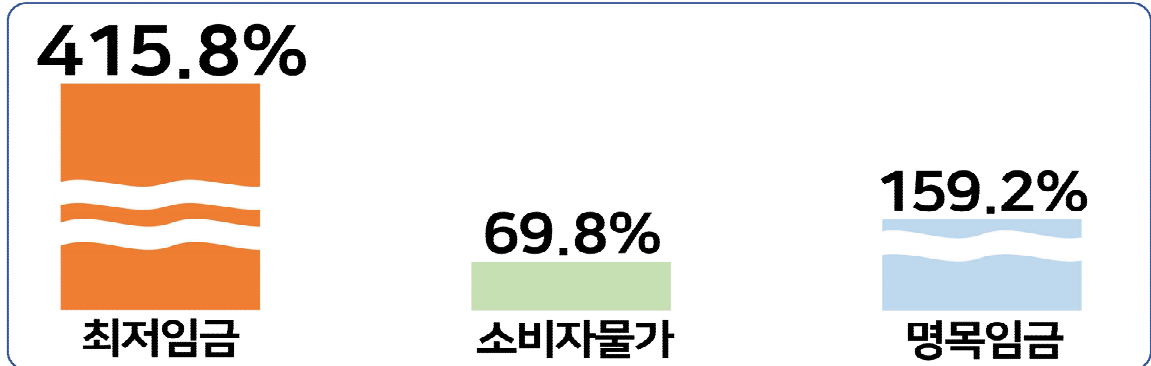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 누적과 그로 인한 수용성 저하에 기인

-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1년 4.3%에서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 **(2001년 vs. 2023년)**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415.8%나 인상되며 물가의 6.0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음.

※ 동 기간 미만자 수는 2001년 57.7만명에서 2023년 301.1만명으로 243.4만명 (421.8%) 증가했으며,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3년 13.7%로 9.4%p 증가

< 그림 2. 2001~2023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의 누적 인상률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각 연도 ;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 **(2013년 vs. 2023년)** 최근 10년간(2013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나타나며, 동 기간 물가상승률(20.0%)의 4.9배로, 명목임금(37.7%)의 2.6배로 올랐음.
- **(2019년 vs. 2023년)** 분석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았음.

< 표 2.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추이 >

구분	'01년	'13년	'19년	'23년	'01 대비 '23년	'13 대비 '23년	'19 대비 '23년
최저임금(원)	1,865	4,860	8,350	9,620	415.8%	97.9%	15.2%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 100)	65.7	93.0	99.5	111.59	69.8%	20.0%	12.2%
명목임금(만원)	175.2	329.9	401.2	454.2	159.2%	37.7%	13.2%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각 연도 ;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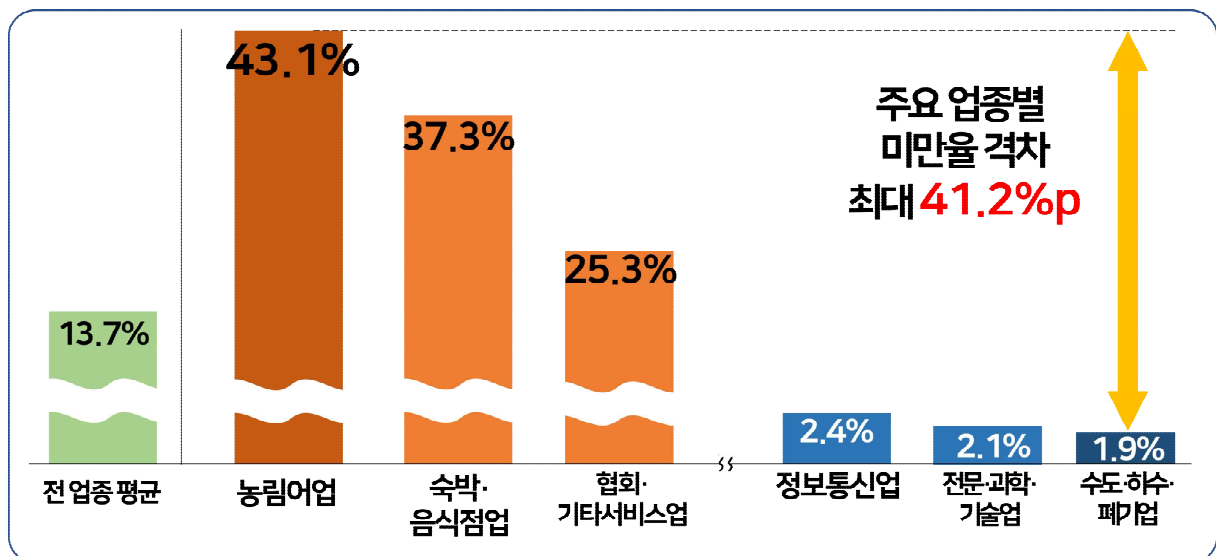
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농림어업 43.1%, 숙박·음식점업 37.3%

-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에서는 現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협회·기타서비스업(25.3%)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수도·하수·폐기업(1.9%), 전문·과학·기술업(2.1%), 정보통신업(2.4%) 등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남.
 - 이는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법정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의미
 - ※ 2023년 기준 임금 근로자 수가 10만명 미만인 4개 업종(광업, 전기·가스·증기업,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 내 고용활동)은 주요 업종간 미만을 비교 시 제외(단, 전체 미만을 산정 시에는 포함)
- 한편, 최근 저출생 해소를 위한 부담완화 방안 중 하나로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바, 2023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한 '보건·사회복지업'의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13.7%)을 상회했으며,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주로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의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60.3%에 달했음.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2024.3.5.)
 - ⇒ 한국은행은 동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해당 업종의 범위는 제시하지 않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만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와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정의
- 특히,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전년(2022년)보다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연이은 인상(2022년 전년대비 5.05%↑ → 2023년 5.0%↑)에 대처할 여력이 유독 부족했음을 방증

-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년 36.6% → '23년 43.1%(6.5%p ↑), 숙박·음식점업은 '22년 31.2% → '23년 37.3%(6.1%p)로 나타나, 모든 업종 중 미만율 수준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인상폭도 가장 컸음
- 이처럼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주요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p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낮은 수도·하수·폐기업(1.9%)은 미만율이 가장 높은 농림어업(43.1%)과 41.2%p에 달하는 격차를 보였으며, 두 번째로 미만율이 높았던 숙박·음식점업(37.3%)과도 35.4%p 차이를 보임.
- ※ 임금 근로자 수가 10만명을 하회해 주요 업종별 미만율 비교에서 제외한 4개 업종 (▲가구 내 고용활동, ▲전기·가스·증기업,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까지 포함 하면, 2023년 전체 업종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60.3%p(가구 내 고용활동 60.3% vs. 광업 0.0%)에 달함.

< 그림 3. 2023년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최대 격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이하 동일)

< 표 3. 2023년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을 >

(단위 : 천 명)

구 분	임금 근로자 수	미만 근로자수	최저임금 미만을	
				(2022년)
전 업종 평균	21,954	3,011	13.7%	(12.7%)
농림어업	104	45	43.1%	(36.6%)
숙박·음식점업	1,440	537	37.3%	(31.2%)
협화·기타서비스업	704	178	25.3%	(21.8%)
부동산업	392	96	24.5%	(20.7%)
보건·사회복지업	2,841	616	21.7%	(21.8%)
예술·스포츠·여가업	347	71	20.4%	(17.4%)
도·소매업	2,133	364	17.1%	(16.2%)
사업시설·지원업	1,328	223	16.8%	(15.5%)
공공행정	1,272	202	15.9%	(14.3%)
운수업	899	97	10.8%	(10.6%)
교육서비스업	1,585	153	9.6%	(8.2%)
건설업	1,703	118	6.9%	(7.1%)
금융·보험업	739	42	5.7%	(7.4%)
제조업	4,028	178	4.4%	(4.6%)
정보통신업	956	23	2.4%	(3.1%)
전문·과학·기술업	1,167	25	2.1%	(2.8%)
수도·하수·폐기업	135	3	1.9%	(2.8%)
가구 내 고용활동	65	39	60.3%	(44.9%)
전기·가스·증기업	92	0.5	0.5%	(0.0%)
국제 및 외국기관	17	0	0.0%	(0.0%)
광업	7	0	0.0%	(0.0%)

주 1. **음영**은 2023년 최저임금 미만을 전체 평균(13.7%)을 상회하는 업종임.

2. 2023년 최저임금 미만을 높은 업종 순으로 나열

3. 표 하단 4개 업종은 임금 근로자수가 10만명 미만인 업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이하 동일)

라 규모별 미만율, 5인 미만 32.7% vs. 300인 이상 2.2%

-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체일 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음.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 9천명 중 32.7%인 125만 3천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現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됨.
 - 세부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체의 미만율은 32.7%로 가장 높았으며, 5~9인 18.7%, 10~29인 11.6%, 30~99인 7.7%, 100~299인 4.0%, 300인 이상 2.2%로 규모가 작을수록 미만율이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체(32.7%)와 300인 이상 사업체(2.2%) 간 미만율 격차는 30.5%p로 나타나며 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양상을 보임.
- 한편, 2023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01.1만명 중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254.1만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4.4%로, 30인 이상(15.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전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301.1만명) 중 300인 미만(294.3만명) 비중은 97.7%

< 표 4. 2023년 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 >

(단위 : 천 명)

구 분	전체	30인 미만 사업체				30인 이상 사업체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 근로자수	21,954	12,617	3,829	3,783	5,005	9,337	4,128	2,125	3,084
미만 근로자수	3,011	2,541	1,253	709	580	470	316	86	68
미만율	13.7%	20.1%	32.7%	18.7%	11.6%	5.0%	7.7%	4.0%	2.2%

- 한편, 2023년 9,62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영향률¹⁾)은 5인 미만 사업체 35.6%, 5~9인 21.4%, 10~29인 15.8% 등으로 조사됨.

1)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內 영향률 분석 Part, 각 연도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533.6만명, 미만을 24.3%

<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한 최저임금 미만을 분석의 필요성 >

- **현행 최저임금 미만을 산출 방식은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 우리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을 크게 과소 추계하는 요인으로 작용**
 -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나, 현행 미만을 계산방식은 지불받은 임금을 주휴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있어 근로자의 시급을 과대 추계하고 미만을 과소 추계하고 있음.
 - (예시) 2023년에 주 20시간을 근로(개근)하고 2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현행 방식으로는 $\frac{20\text{만원}}{20\text{시간}} = \text{시급 } 1\text{만원}$ 으로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이 아니어서 미만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시간을 감안하면 $\frac{20\text{만원}}{24\text{시간}} \approx 8,333\text{원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액 미만
 - 통계 분석 시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미만을 계산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있어, 경총이 일부 통계적 제약을 감안하고 새롭게 미만을 계산(따라서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인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현행 방식	VS.	보완 방식
$\frac{\text{월 평균 임금}}{\text{소정근로시간}}$		$\frac{\text{월 평균 임금}}{\text{소정근로시간} + \text{법정 유급주휴시간}}$

- **이하에서는 현 최저임금 미만을 산출 방식에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해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을 경총의 방식에 따라 별도로 분석하였음.**
 - 동 분석에서는 현행법 상 법정 유급주휴 적용 제외 대상인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종사자'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를 미만자 수에서 배제함으로써 매우 보수적인 수치 산출*
 - *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종사자'가 속한 농림어업 근로자 전체를 추가 분석대상에서 제외 (기존 미만자수, 미만을 활용),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관련 대표 3개 직종 종사자 중 임금근로자를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이후 산출된 미만자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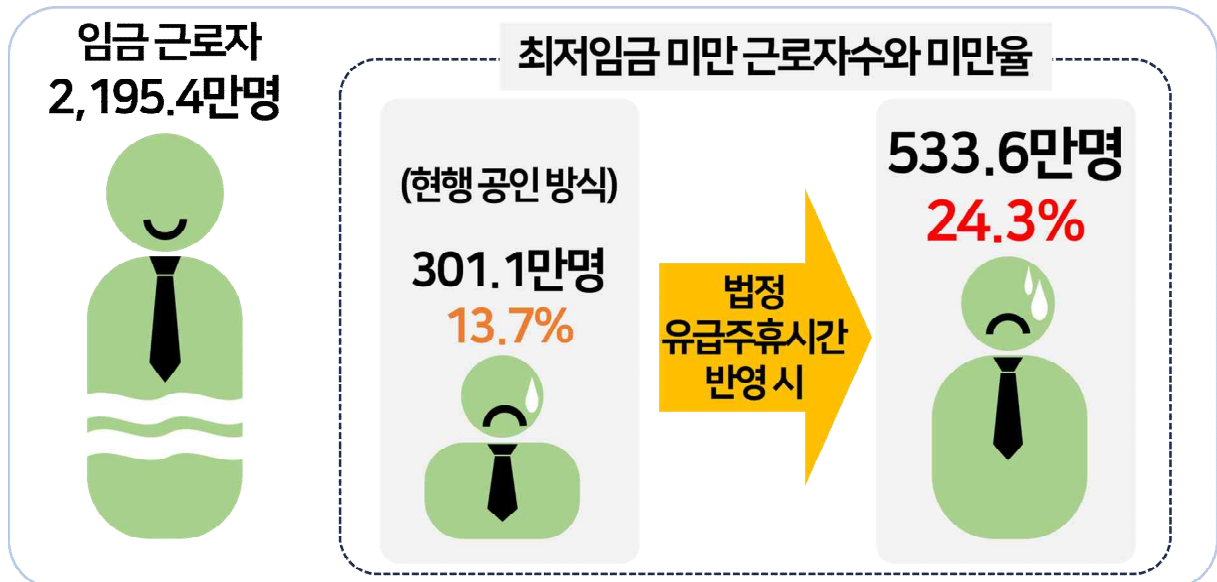
※ 최저임금 미만을 분석 방법, 세부산출방식 및 가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 보고서 17p 참조

□ 現 최저임금 미만을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2023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533.6만명, 미만율은 24.3%에 달함.

-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에 의하면 2023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01.1만명, 미만율은 13.7%
- 그러나,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해 산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33.6만명으로 현행 공인 방식보다 232.5만명 많았으며, 미만율도 24.3%로 현행 방식 대비 10.6%p 더 높아짐.
- 이는 현행 최저임금 미만을 산출 기준 하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액(2023년 9,620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가 232.5만명*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

*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533.6만명 - 現 기준 301.1만명

< 그림 4.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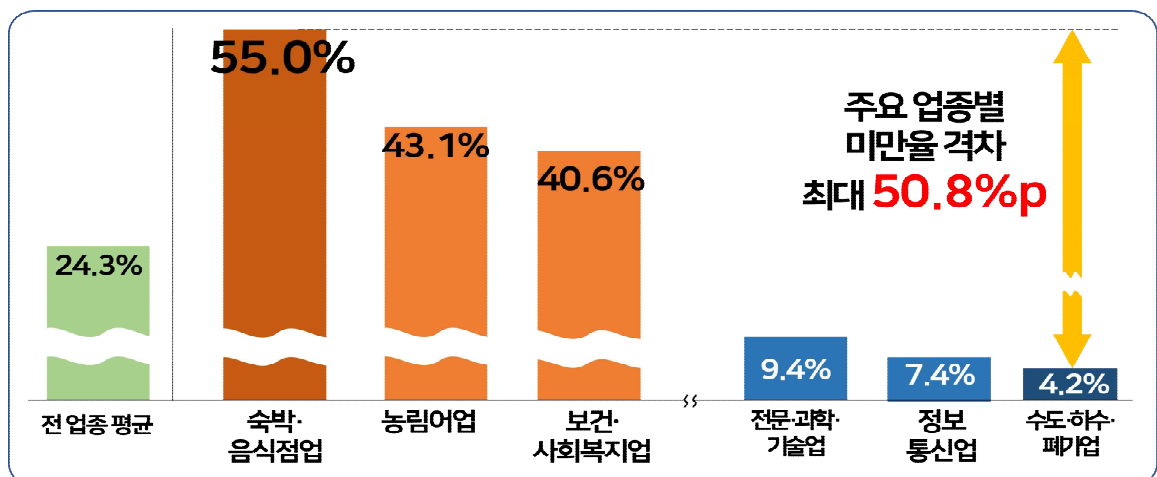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미만을,

숙박·음식점업 55.0%, 5인 미만 사업체 미만을 49.4%

- **(업종별)**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55.0%)과 보건·사회복지업(40.6%) 등 일부 업종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하수·폐기업(4.2%)과 정보통신업(7.4%) 등은 미만율이 낮았음.
-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 전에도 37.3%로 높았던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반영 후 55.0%로 17.7%p 더 높아지면서,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할 경우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2023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으로 나타남.
 - 반면, 수도·하수·폐기업(4.2%), 정보통신업(7.9%) 및 전문·과학·기술업(9.4%) 등은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후 미만율이 소폭 높아지기는 했으나, 미만율이 낮은 업종임에는 변화가 없었음.
- 이에 따라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전후 주요 업종별 미만율의 최대 격차는 41.2%p(농림어업 43.1% vs. 수도·하수·폐기업 1.9%)에서 50.8%p(숙박·음식점업 55.0% vs. 수도·하수·폐기업 4.2%)로 더 커짐.

※ 임금근로자 수가 10만명을 하회해 주요 업종별 비교에서 제외된 4개 업종을 포함하면, ‘가구 내 고용활동’은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전후 미만율이 60.3%에서 76.7%로 높아지면서, 전체 업종 간 미만율 격차도 60.3%p에서 76.7%p(가구 내 고용활동 76.7% vs. 광업 0.0%)로 증가

< 그림 5.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2023년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을 및 최대 격차 >



주 : 농림어업의 미만율이 기존 분석과 동일한 이유는 법정 유급주휴시간 적용제외 대상인 ‘농림사업과 축산·양장 및 수산사업 종사자’를 유급주휴 반영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임.

< 표 5.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2023년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수준 및 격차 >

구 분	유급주휴 미반영(a)	유급주휴 반영(b)	격차(b-a)
전 업종 평균	13.7%	24.3%	10.6%p
숙박·음식점업	37.3%	55.0%	17.7%p
농림어업	43.1%	43.1%	-
보건·사회복지업	21.7%	40.6%	18.9%p
협화·기타서비스업	25.3%	40.4%	15.1%p
예술·스포츠·여가업	20.4%	33.3%	12.9%p
도·소매업	17.1%	31.3%	14.2%p
부동산업	24.5%	24.5%	-
공공행정	15.9%	22.8%	6.9%p
사업시설·지원업	16.8%	20.7%	3.9%p
교육서비스업	9.6%	19.8%	10.2%p
운수업	10.8%	16.2%	5.3%p
건설업	6.9%	15.9%	9.0%p
제조업	4.4%	13.7%	9.3%p
금융·보험업	5.7%	12.3%	6.6%p
전문·과학·기술업	2.1%	9.4%	7.3%p
정보통신업	2.4%	7.4%	5.0%p
수도·하수·폐기업	1.9%	4.2%	2.3%p
가구 내 고용활동	60.3%	76.7%	17.4%p
전기·가스·증기업	0.5%	0.5%	-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
광업	0.0%	0.0%	-
주요 최대-최소 간 격차	41.2%p	50.8%p	9.6%p

법정
유급주휴
시간
반영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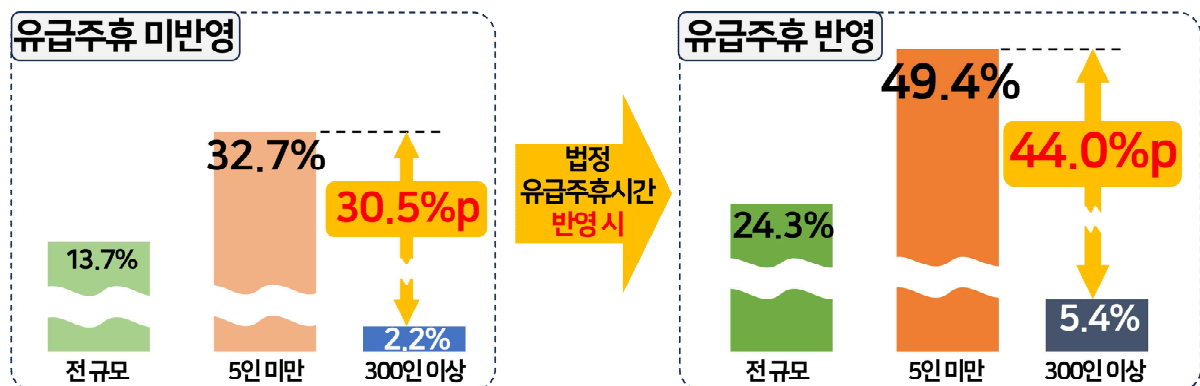
- 주 1. 음영은 2023년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전후 미만율이 전 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업종임.
 2.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 순으로 나열
 3. 표 하단 4개 업종은 임금 근로자수가 10만명 미만인 업종
 4. 농림어업의 미만율이 기존 분석과 동일한 이유는 법정 유급주휴시간 적용제외 대상인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종사자'를 유급주휴 반영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임(이하 동일).

- **(규모별)**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2%에서 5.4%로 3.2%p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32.7%에서 49.4%로 16.7%p 증가해, 격차가 30.5%p에서 44.0%p로 크게 확대
- 세부 규모별로 살펴보면,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5인 미만 사업체의 미만율은 49.4%로 가장 높았으며, 5~9인 32.6%, 10~29인 22.2%, 30~99인 16.7%, 100~299인 11.3%, 300인 이상 5.4%로 나타남.
- 특히,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미만율은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폭으로 늘어나,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의 규모별 미만율 격차는 반영 전 30.5%p에서 반영 후 44.0%p로 더 커짐.

< 표 6.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2023년 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

구 분	전체	30인 미만 사업체				30인 이상 사업체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유급주휴 미반영(a)	13.7%	20.1%	32.7%	18.7%	11.6%	5.0%	7.7%	4.0%	2.2%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유급주휴 반영(b)	24.3%	33.6%	49.4%	32.6%	22.2%	11.8%	16.7%	11.3%	5.4%
격차(b-a)	10.6%p	13.5%p	16.7%p	13.9%p	10.6%p	6.8%p	9.0%p	7.3%p	3.2%p

< 그림 6.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2023년 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 격차 >



사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19.8%,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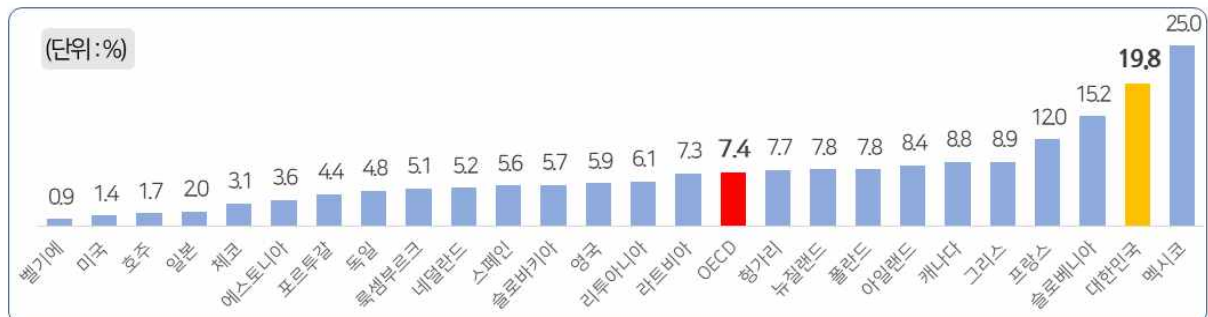
-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비교국 중 최상위로,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 Part는 OECD의 최신 분석보고서 「Minimum wages in times of rising inflation(2022.12월)」에서 ‘최저임금 영향률’ 부분을 발췌·요약한 것임.

** OECD 보고서 원문은 ‘% of workers earning at or below the minimum wage’로 표현, 이를 각 나라별로 조사하여 제시

- **(국제비교)** OECD가 최근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7.4%였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19.8%)은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하며,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

< 그림 7. OECD 회원국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비교 >



주 :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아일랜드는 2021년 기준,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은 2020년 기준, 캐나다는 2019년 기준, 나머지 국가는 2018년 기준임.

자료 : OECD ; Minimum wages in times of rising inflation(2022.12월)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히 인상되어 왔기 때문으로 추정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히 커졌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

□ 2023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301.1만명(미만율 13.7%), 전년(275.6만명, 12.7%)보다 높아져, 2020년부터 감소하던 미만율이 다시 증가

- 높은 미만율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 2001년 대비 2023년 지표별 인상률

: 최저임금 415.8%, 소비자물가 69.8%, 명목임금 159.2%

□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現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 (주요 업종) 농림어업 43.1%, 숙박·음식점업 37.3% vs. 전문·과학·기술업 21%, 수도·하수·폐기업 1.9%

※ 최근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이슈가 된 ‘돌봄서비스 업종’과 관련하여,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주로 분포하는 업종인 ‘가구 내 고용활동’의 2023년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60.3%로 나타남.

- (규모) 5인 미만 사업장 32.7% vs. 300인 이상 2.2%

□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한 미만율 24.3%, 현행 미만율 산출 기준(13.7%)보다 10.6%p ↑

- 법상 강제되는 유급주휴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현행방식은 미만율을 명백하게 과소추계하는 요인으로 작용

-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액 미달

* 숙박음식점업 55.0% (現 기준 대비 17.7%p↑), 5인 미만 사업체 49.4% (現 기준 대비 16.7%p↑)

□ 2023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現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이에, 우리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첨부

최저임금 미만을 세부산출방식 및 주요가정

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3년 8월 기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23년 상반기 기준)

② (방식)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여부를 구분하여 산출

① (법정 유급주휴시간 미반영 : 現 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 月 임금
총액을 月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구한 후, 2023년
최저임금액(9,620원)과 비교하여 미만을 산출

$$\text{시간당 임금} = \text{月 임금총액(3개월간 월평균임금*)} \div \text{月 소정근로시간(평소 1주 근로시간*} \times 30.4 \div 7)$$

* 월 임금총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은 경찰 부가조사 상 3개월간 월평균임금, 평소 1주 소정근로시간 수치 활용

②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 경총 재산출 방식) 月 임금총액을 '月 소정
근로시간 + 月 법정 유급주휴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구한 후,
2023년 최저임금액(9,620원)과 비교하여 미만을 산출

$$\text{시간당 임금} = \text{月 임금총액(3개월간 월평균임금)} \div \text{月 근로시간[(평소 1주 근로시간 + 법정 유급주휴시간*)} \times 30.4 \div 7]$$

*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법정 유급주휴시간 부여

③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한 최저임금 미만을 산출 방식(세부)

① 공통 가정

- i) 근로자가 약정된 근로시간(예. 주40시간제 근로자는 40시간, 초과근로시간 제외)을 모두 개근(공휴일, 연차휴가 사용은 무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 ii) 연소근로자·유해작업근로자 등의 1일 소정근로시간 상한 8시간
- iii) 약정유급주휴시간(예: 토요일) 미포함

⇒ 이상의 3개 요인은 통계적 한계로 식별하기가 어렵고,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거나 서로 상쇄되어 실제 미만을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

② 현행법 상 법정 유급주휴시간 적용 제외 대상인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종사자'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를 미만자 수에서 제외 하여 보수적인 수치 산출

-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종사자'가 속한 농림어업 근로자 전체를 추가 분석대상에서 제외(기존 미만자수, 미만을 활용)
- '감시단속 근로 종사자' 관련 대표 3개 직종 종사자* 중 임금 근로자의 업종별 분포를 파악한 후, 이를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이후 산출된 미만자 수에서 배제

* 현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23년 상반기)'를 통해 ▲ 건물관리원 및 검표원, ▲경호 및 보안관련 종사자, ▲계기·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중 임금 근로자 수를 추출한 후, 각 업종에서 모두 제외

/끝/